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I.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지원 조례」 7
2.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1

II.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7
2.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20

III.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25
2.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33

IV. 공공정책 정보 안내

-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45

V.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지자체 설치·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정보공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49
2. 역사 왜곡 문제 제기 자료 이용 제한·폐지 등을 조례 규정 가능 여부 53

VI. 법령 해석 사례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 가능 여부 61
2. 식품명인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66

I . 최근 타 시 · 도 입법 동향

I.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04호, 2025. 10. 10., 제정】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을 규정함(제5조).

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9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경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지난 제416회 임시회(2025. 2. 11.~2. 21.)에서 서난이 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함.

【주요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함
- 정부는 2022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2025년 3월에 종료됨
- 규제완화 종료 후 이주아동은 불법체류자로 취급되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2024. 7. 19.) 되었지만,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도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공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04호, 2025. 10.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 출생하였으나, 출생 확인이 되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외국인을 말한다.
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란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생년 월일 등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용 카드를 말한다.
4.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이란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해당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 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적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제10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6호, 2025. 10. 10., 제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내 학교에서도 교실 등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유휴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에 대해 규정함(제5조).
 다.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경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도 역시 학생 및 학급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단위: 명)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감	학생 수	증감	학생 수	증감
2025	75,909		48,665		48,191	
2026	70,801	(↓ 5,108)	46,985	(↓ 1,680)	47,511	(↓ 680)
2027	65,079	(↓ 5,727)	44,965	(↓ 2,020)	47,603	(↑ 92)
계	211,789	(↓ 10,835)	140,615	(↓ 3,700)	143,305	(↓ 588)

- 학급 수(24년 기준, 전년대비): 초(4,774개, ↓95개), 중(2,055개, ↓5개), 고(2,184개, ↓18개)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의 유휴공간은 증가하고 있고, 해당 공간은 다양한 시설로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주로 전시, 공연, 예술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예술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음(2026년까지 200개교에 예술놀이터 조성 예정, 전북미래교육신문).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립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6호, 2025. 10.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학교 내 공간 중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건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이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휴공간 활용 기본방향
2. 유휴공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
3. 유휴공간 현황 및 사용 실태
4.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5.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활용) 학교장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에 필요한 공간
2. 학생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공간
3. 교직원의 연수, 회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 개선 및 지원) ① 학교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가 학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우수한 학교와 소속 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2025. 10.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신청 등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일 부 개 정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삭 제>
② (생략) 1. ~ 5. (생략)	(현행과 같음)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현행과 같음)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는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함.

- 우리 도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2025. 10. 10.)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그 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광특구 지정신청 등에 따른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5. 10. 23.)되었으나,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878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2장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 ~ 제6조 (생략)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7조 ~ 제9조 (생략)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5장 관광모니터

제12조 ~ 제18조 (생략)

제6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 센터 설치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7장 관광특구

제22조(관광특구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23조(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 중 도 조례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0. 10.]

□ 제정이유

-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주요 제 정 내 용
제11조(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① ~ ④ (생략) ⑤ 시·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7조(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테두리 안에서 장애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평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기회의 근거가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 전북자치도 등록 장애인: 총 128,989명(2024. 12월 기준)
- 상위법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필수조례) 하고 있는바, 법 시행(2027. 5. 12.) 전(前) 조례 개정(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센터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3.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4.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적보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사용내역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III.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국회도서관, 2025-20호(통권 제283호), 박진애】

◇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 온 ‘공무상 비밀 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이번 개정 헌법과 「정보자유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관련법** 대한민국 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주제어**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절차, 공무상 비밀의무, 공공정보공개, 공공정보 접근권

□ 오스트리아 헌법 개관

○ 오스트리아 헌법은 단일한 성문헌법전이 아닌, ‘종합적 헌법 (Gesamtverfassung)’이라고 불리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1920년 「연방헌법」(B-VG)을 중심으로 다수의 헌법적 법률 및 규정들(1867년 「국가기본법」(StGG)), 1964년 헌법적 효력이 부여된 「유럽인권협약」(ECHR) 등을 합쳐서 헌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오랜 기간 정당 간의 갈등 속에서 특정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률 및 법률 규정들에 ‘헌법적 효력’(Verfassungsrang)을 부여해 온 오스트리아의 특수한 관행의 결과이다.

○ 「연방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 정당의 이념적 대립을 조율하며 탄생한 실용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특히 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국가의 구체적 목표를 규정하기 보다 국가 의사결정 절차를 정의하는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법적틀을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공화국의 토대가 되어 오스트리아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 「연방헌법」은 1920년 10월 1일 제정되어 이후 100회 이상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2020년 연방헌법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스트리아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행 헌법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최근 2024년 7월 18일 「연방헌법」에 공공정보 공개의무 및 정보접근권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 오스트리아 헌법 개정 절차

○ 오스트리아 의회는 ‘국민의회’(Nationalrat)와 ‘연방의회’(Bundesrat)로 구성되어 있고 헌법 개정 절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헌법이나 개별법에 포함된 헌법 규정은 ‘국민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이때 ‘헌법’(Verfassungsgesetz), ‘헌법 규정’ (Verfassungs bestimmung)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제44조제1항).
- 한편 헌법이나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고, 입법과 집행에서 주(州)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수의 2/3가 찬성하여야 한다(제44조제2항)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발의권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 제안은 국민의회 의원,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1/3이상의 발의안이나 연방 정부의 법률안으로 국민의회에 제출된다(제41조).

○ 헌법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전면 개정의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특정 조항만 변경하는 부분 개정은 국민의회 의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 오스트리아의 최신 헌법 개정인 2024년 7월 18일 헌법 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공정보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자유법」(IFG)10이 제정되었고, 개정 「연방헌법」과 「정보자유법」은 동일하게 2025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 최신 「연방헌법」 개정: 공공정보 공개 및 접근권

○ 202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0조제3항에서 제5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비밀의무’(Amtsgeheimnis)가 폐지되었다.

○ 신설된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보장한다.

- 정보공개 의무: 연방정부, 주정부, 법원 등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은 '일반 공공(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 정보접근권: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는 주정부(Länder), 연방정부 등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인구 5천 명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 Gemeinde)는 사전적·적극적 공개(proaktive Veröffentlichung)를 해야 하는 의무에서는 예외가 되며, 개인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만 적용된다.

○ 국가 안보, 외교, 재정적 손해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내용은 「정보자유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 「연방헌법」에서 신설된 제22a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22a조 [신설]

(1) 국민의회(Nationalrat)와 연방의회(Bundesrat), 연방 및 주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일반법원, 감사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및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익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구가 5,0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공개 의무가 없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연방 및 주 행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통합 또는 외교 정책의 불가피한 이유, 국가안보, 포괄적 국방 또는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 결정 준비, 지역 또는 기타 자치 기관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피해 방지 또는 다른 기관의 최우선적 합법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다른 자치 기관은 자체 책임 영역 내의 사항에 대해서만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감사원 또는 주 감사원의 관리 아래 있는 재단, 기금, 기관 및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단,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감사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등록 자본, 주식 자본 또는 자기 자본의 최소 50%에 해당하거나 해당 참여 비율을 가진 사업체보다 상위 수준인 경우에 한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정보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세부 규정은

1. 연방법에 따라 정해지며, 주의 법률에 귀속된 사안일지라도 통일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 주제에 대한 집행 사항이 연방의 사안인지 주의 사안인지에 따라 집행 주체를 정한다.
연방은 제1항에 따라 주제 입법안 작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연방법률은 주의 동의를 있어야만 공포될 수 있다. 개별 분야를 규율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해당 사안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정보자유법」 제정

○ 이번 헌법 개정의 특징으로는, 헌법 조항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접근 절차, 절차적 장치, 예외 사유, 중앙정보등록부 웹사이트 설치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일반 법률인 「정보 자유법」이 동시에 제정된 점을 들 수 있다.

○ 2025년 9월 1일 발효된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일반의 이익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특정 기관의 활동 또는 사업 영역 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제1조).

정보공개 의무 기관

-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관
- ▲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치 기구의 기관
- ▲ 연방 또는 주 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기타 법인 및 자연인의 기관
- ▲ 회계감사원 또는 주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재단, 기금, 기관
- ▲ 회계감사원 또는 주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기업.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통제 대상 법인과 공동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의무: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및 사법 기관은 일반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제6조)이 아니며 일반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동안에만 해당된다. 주민 5천 명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4조)

○ 비공개 사유: 정보의 공개 또는 접근 요청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공개가 필요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정보공개 이익(특히 표현의 자유 행사)과 비공개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제6조제1항). 정보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부분공개 원칙, 제6조제2항).

비공개 사유

- ▲ 통합 또는 외교 정책상의 강제적 사유: 유럽연합법 또는 국제법상 의무 준수 등
- ▲ 국가 안보, 포괄적 국방, 공공질서 및 안보 유지
- ▲ 의사결정 준비과정의 보안: 정부, 장관, 지방 정부 등의 합법적 의사 결정 과정 및 그 준비 보호
- ▲ 공식 또는 사법 절차의 이익: 기관의 감사나 기타 활동, 협상 및 투표의 법적 기밀성 보호
- ▲ 기관, 지방 당국 또는 자치 기구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피해 방지
- ▲ 타인의 우선적인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 직업·사업 또는 영업 비밀, 은행 비밀, 미디어 편집상의 비밀, 지적 재산권 보호

○ 정보접근 절차: 동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접근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단계	내용	관련 조항
정보 요청	• 서면, 구두, 전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로 요청 가능함. 정보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함.	제7조
처리 기한	• 요청 접수 후 지체없이, 최대 4주 이내에 정보접근을 허용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추가 4주 연장 가능함.	제8조
정보 제공	• 요청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이미 공개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로 안내 가능함.	제9조
접근 거부 사유	• 요청이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정보제공이 해당 기관의 다른 활동을 중대하고 불균형적으로 저해할 경우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9조제3항
이해관계인 절차	• 정보제공이 제3자의 권리(제6조제1항 제7호)를 침해할 경우, 정보제공 전 해당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제10조

○ 법적구제 절차: 정보접근이 거부된 경우, 요청자는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제11조제1항).

-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소송 전 사전 결정 기한은 3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절차가 보장된다(제11조제2항).
- 행정법원은 접근 거부 that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판결해야 한다(제11조제3항).
- 정보 요청, 정보제공 절차 관련 신청, 정보 자체 및 관련 결정서에 대하여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수료는 면제된다(제12조).

○ 민간 주체에 대한 적용: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재단, 기금, 기관 및 기업(공기업 등)에도 정보접근 절차가 준용된다(제13조). 이들 기관의 경쟁력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상장회사 및 종속기업은 이 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들 민간 주체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요청자는 기관의 결정서 없이 정보 제공 기한 만료 후 4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직접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제14조).

○ 지원 및 감독 기관: 데이터보호청(DSB)은 동법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의무기관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데이터보호청은 법 발효 후 3년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정부와 의회에 제출된 후 대중에게 공개된다(제15조).

○ 사전 정보공개 의무(제4조제1항)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생성되는 정보에 적용된다. 그 이전에 생성된 정보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제20조).

□ 요약 및 결론

○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 비밀 원칙’을 폐지하고, 2024년 7월 18일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 원칙을 국가 운영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시민의 알 권리보다 행정 기밀 유지를 우선시하여 정부 불신과 부패 은폐의 도구로 비판받아 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025년 9월 1일 발효한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시 정책이 아닌,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제22조 신설)로 확고히 했다.

○ 헌법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 요청 권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동법은 신속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보호청이 3년 이내 입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이번 제도 개혁은 유럽연합 내에서 낮은 투명성 평가를 받아온 오스트리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결실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4년 법치주의 보고서”는 「정보 자유법」 제정을 공공정보 접근 권고 이행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제 시민단체 Access Info Europe(유럽 전역의 정보접근권 증진 및 보호에 중점을 둔 인권단체) 등은 오스트리아의 「정보자유법」이 “진보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개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정보 정의의 협소함 ▲미흡한 사전공개 의무 ▲예외조항 적용 시 공익성 테스트 부재 ▲불이행 시 제재조치 결여 등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준(트롬쇠 협약) 대비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한계는 향후 오스트리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노동자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새로운 고용 형태이다.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2023년에 약 88만 명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자유로운 노동 방식에 대한 선호 등과 맞물려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 형성된 노동법 및 제도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개선을 통해 법적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을 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즉 산재보험 및 직업교육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 보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주제어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보상, 사회적 책임, 사회적 대화, 고용안정

□ 플랫폼 노동자 보호 현황

1. 우리나라 현황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2024년 8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2021년 66.1만 명, 2022년 79.5만 명, 2023년 88.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우리나라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 제공자’를 규정하였으며, 노무 제공자의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의 종사자가 노무 제공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 또한,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판결(2024두32973)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노무 제공자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매개로 직접·개별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인지, 그리고 노무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는 여전히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독립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2. 프랑스 현황

○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서비스국(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 DARES)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연결되어 노무를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는 약 60만 명(전체 노동자 대비 2%)이다

○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 분야는 부동산 중개인, 보험 중개인, 마케팅 컨설턴트, 작가, 농부, 의사, 미용사, 정비공, 건설 분야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개발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표 1 2023년 주요 플랫폼 노동 10대 분야

분야	세부 직업	비율(%)
중개인	보험, 대출, 부동산, 마케팅, 컨설팅 등	18
카페 등 운영	레스토랑, 캠핑장, 숙박, 호텔 등	9
서비스	택시, 도로 운송업, 미용, 청소 등	9
농부	곡물, 정원, 포도 재배 등	7
비식품소매업	중고품 및 골동품 판매, 의류, 꽃집, 담배 가게 등	6
의료	일반의, 전문의, 치과 의사, 심리학자, 약사 등	6
수리 등 작업	정비사, 목수, 재단사 등	5
재활	물리치료, 언어치료, 운동 및 심리 치료 등	5
건설 등	석공, 목수, 배관공, 난방 엔지니어, 전기, 도장	4
법률, 기술 등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가, 소프트웨어 등	3
	기타	28
	합계	100

* 출처: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서비스국

○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을 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나 직업

교육비 등과 같은 비용을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였다.

○ 또한, 2022년에는 운송·배달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대표 간의 사회적 대화(단체협약)를 규정하여 노동 조건, 보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쟁점이 협의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1.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전」 제L.7342-1조 이하

(1) 일반규정: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나 판매되는 상품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관련 의무적 보험이나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규명령으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무 능력 유지 및 향상, 직업전환·재취업, 실업 예방 등의 평생 직업교육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가 직업훈련 과정, 역량 진단, '경험 인정 인증(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⁵⁾ 및 '수습(Apprentissage) 교육 등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의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의 '개인 직업훈련계좌(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조건, 매출기준액 및 업종은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이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 플랫폼 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거부 등과 같은 집단행동 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 책임을 지거나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를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의 활동 수행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내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와 이를 전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데이터의 구체적 범위와 접근, 추출 및 전송 방법은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2) 특별규정: 운송·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중 차량운송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와 이륜 및 삼륜 차량(원동기 유무 모두 포함)을 이용하여 상품배달을 하는 노동자는 일반규정뿐만 아니라 특별규정도 적용받는다.

○ 플랫폼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의 조건과 이행 방식, 권리·의무와 노동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헌장(Charter)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플랫폼과 관계를 맺은 노동자의 직업 활동 수행 조건, 특히 플랫폼 이용자와의 연결 규칙, 이용자의 수요가 적을 경우 동시에 접속하는 노동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이 규칙은 노동자가 특정 플랫폼 하나에만 묶이지 않고, 특정 시간대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접속 및 해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정한다.
- 직업적 역량 개발 및 직업경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정한다.
-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활동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직업상 위험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발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플랫폼과 노동자 간에 직업 활동 수행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 방식을 정해야 한다.
- 노동자의 직업 활동 조건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에 관해 노동자가 통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 기대되는 서비스 품질, 플랫폼이 노동자의 활동과 그 이행을 점검하는 방식, 플랫폼과 노동자 간 상업적 관계의 종료 사유, 그리고 이 경우 노동자가 보장받는 권리를 정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보험이나 복지 혜택 등(의료비 보충, 상해보험, 퇴직연금 등)을 마련한다.

○ 플랫폼 사업자는 현장을 노동부에 제출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노동부는 현장의 내용이 「노동법전」에 부합하는지를 승인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에 앞서 플랫폼 사업자는 현장에 대해 노동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노동자의 의견은 승인 신청서에 첨부된다.

○ 노동부는 현장을 접수한 날부터 4개월 내 승인 여부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현장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노동자와 체결하는 계약 또는 일반 이용약관에 첨부된다.

○ 플랫폼 사업자는 현장 승인을 통지받은 후 2개월 내, 노동자는 승인 결정이 확정된 날짜와 함께 자신에게 알려진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관할 법원은 4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내 판결이 없거나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이관된다.

2.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대화 「노동법전」 제L.7343-1조 이하

○ 사회적 대화(Dialogue social)는 운송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이용하는 운송 활동 분야 및 이륜 및 삼륜 차량(원동기 유무 모두 포함)을 이용하여 상품배달을 하는 활동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이에 조직된다.

○ 사회적 대화 체결의 주체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하나 이상의 단체와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하나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단체이다.

○ 사회적 대화 체결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대표성을 인정받은 최소한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 단체의 서명
- ②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노동자 단체 중 30% 이상 득표한 하나 이상의 노동자 단체의 서명
- ③ 동일한 선거에서 투표자 수와 관계없이 대표성을 인정받는 노동자 단체 중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하나 이상의 노동자 단체가 협약에 반대하지 않을 것

○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에게 교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제시한 제안들에 대하여 이유를 갖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대화는 정해진 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으로 체결된다.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사회적 대화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회적 대화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서면이 아닌 경우 무효). 또한, 사회적 대화는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만약 외국어로 작성된 특정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조항은 노동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사회적 대화는 공개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Base de données nationale)에 등재되고 그 내용은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개방 표준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된다. 사회적 대화는 교섭자와 서명자의 이름과 성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공표된다. 사회적 대화 체결 후, 당사자들은 사회적 대화나 합의의 일부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다음 주제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교섭이 개시된다.

- ① 서비스 제공 가격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수입 결정 방식
- ② 노동자의 직업 활동 수행 조건, 특히 그들의 활동 시간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알고리즘과 그 변화가 업무 수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
- ③ 노동자가 그 활동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직업상 위험의 예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 ④ 직업적 역량 개발과 직업 경로의 안정성 확보 방식

□ 요약 및 결론

○ 프랑스는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플랫폼이 업무 특성과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용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플랫폼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전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운송·배달 분야에서는 헌장(Charter)을 통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절차 등 핵심 권리·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였다.

○ 이어서 2022년 프랑스는 운송·배달 분야 플랫폼 노동에 대해 노동조건, 보수,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 다양한 쟁점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를 규정하여, 개별 계약에 의존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프랑스의 입법례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노동자 범주에 직접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대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추천 자료

- 한인상,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특집I), 월간노동법률, 2021
- Mme Carole Grandjean et Mme Danièle Obono, La protection sociale des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numériques, Commission des affaires européennes, 2021
- 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 Les travailleurs de plateforme: quels profils et quelles conditions de travail?(N°69), 2024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IV.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간	상임위	주요정책정보
11월 첫째주	국토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반 재해 초단기 예측을 위한 나우캐스트 연구 : 방법론 정립을 중심으로 ○ 서울시 지하철 역사 편스테이션(Fun Station) 콘텐츠 발굴 분석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수용성 연구 ○ 환경보건 정책의 Planetary Health 패러다임 도입방안 마련 연구
	성평등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범죄 대응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 성착취 피해 예방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제약바이오 산업동향 및 진출기회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외교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0차) UN 총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인공지능 플러스(AI+) 전략 :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 심화 실시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분야 인공지능(AI) 도입 지원 방향 연구
11월 둘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전방산업 업황 진단 및 2026년 전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정책 변화와 국내 영향 및 시사점
	행정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정책과 사례 :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 디지털 교육 시대 AI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주간	상임위	주요정책정보
11월 둘째주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2025년) 개인정보 이슈 심층분석. 2025 vol.4,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플랫폼 안전
	외교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 : 전망과 시사점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기의 국내외 백신 시장 동향 분석
	국토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건축물에 도심항공교통 옥상버티포트가 설치될 수 있을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연구 ○교통빅데이터 기반 도시 및 광역 철도 수요 추정 개선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산업 정책동향. 2025-10, 피지컬 AI가 여는 새로운 산업 운영의 시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양립 방안 연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동향 및 국내 시사점
11월 셋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원전수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시사점 : 美 원자력 기술통제 규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시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주요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략과 지재권 경쟁력 분석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의료 AI 규제 체계 현황과 전략
	외교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2023-2025) 가자 전쟁의 평가와 함의
	행정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와 기업의 ESG 협력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Food 수출 확대 방안
	문화체육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에 따른 방송미디어산업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여가정책의 안정적 자원 도입 방안 연구
	국토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빈집 실태 및 정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 증진 요인과 지원 과제
	기획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 정비와 확대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이 주도하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황 : AI와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실현하는 '新 산업혁명'은?

V.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중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의회사무국 의견25-0356, 2025. 11. 11.)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천안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조제1항),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의무(같은 조 제2항),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제6조),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의무(제11조)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폭넓은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보이고,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소관 시설물의 기본적인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사무의 일환으로서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제55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등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아닌 천안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설물관리법 제55조의2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각주: 2020. 10. 20. 법률 제175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4. 2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직접 소관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 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 13. (생략)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립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군포시 의견25-0366. 2025. 11. 5.]

□ 질의요지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군포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갖추어야 하는 자료의 수량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의 내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법령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대해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하는 사무는 군포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이하 “역사왜곡자료”라 한다)란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이하 “군포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공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 중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의 사실을 왜곡·은폐·미화하여 시민의 역사 인식에 명백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서관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결정 대상의 하나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간행물’을 규정하고 있고, 출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간행물을 배포한 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포시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역사왜곡자료와 출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해 간행물은 상당 부분 그 범위가 중첩될 소지가 있어 출판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결정 및 수거·폐기 외에 별도로 조례에서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심의와 그에 따른 처분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지 않은 도서관 자료가 군포시 조례안에 따라 역사왜곡자료로 판정되어 이용 제한이나 폐기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유해 간행물 제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해에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군포시 조례안 제7조제10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군포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포시 또는 공공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왜곡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로 보이지만, 해당 공개를 통해 자료의 작성자 등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공개행위가 역사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저술 활동이나 출판 등을 사실상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군포시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군포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선정 및 구입 기준의 수립·변경(제1호), 시민희망도서관의 구입의 적정성(제2호), 역사왜곡자료의 판정 및 관리 조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사항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군포시에 이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생략)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 시설 기준 (생략)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출판문화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VI. 법령 해석 사례

VI.

법령 해석 사례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등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가능 여부 [의청 「농업과학기술진흥법」 제3조등 관련 【법제처 25-0796, 2025. 11. 14., 농촌진흥청】

□ 질의요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 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회답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제1항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도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시행과 관련된 책무와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업무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업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

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농업인등의 지원 업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 등은 농림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5조제1항),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며(제12조제2항), 성과평가 및 포상 등을 주관(제13조제1항 및 제14조)한다는 점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가 국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국가가 보조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고, 국비 지원에 따른 국가의 지도·감독과 해당 업무의 자치사무·위임 사무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각각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법제처 25-0680, 2025. 11. 14., 농림축산식품부】)

□ 질의요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 회답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서는 적합성평가를 제품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품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의 대상은 제품, 서비스, 공정이라 할 것인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대상인 ‘사람’은 문언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대상인 제품, 서비스,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성평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국제표준”이란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은 원칙적으로 과학적·기술적 성격을 지닌 기준으로서 적합성평가는 이러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제품등을 실증하여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경력, 윤리성 및 기능의 보호가치 등 사람이

보유한 기능이나 윤리성 등 가치판단적 성격의 요소를 평가사항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격에 대한 평가로서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실시하는 적합성평가와는 구별되는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제도의 주된 도입 목적이 식품문화의 계승·보호와 식품산업 진흥에 있는 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최종 완제품 및 서비스를 접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 원료나 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성·안전성 관리를 위해 국가 및 국제적 기준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가 공인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취지의 제도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은 제품 등의 기술성·안전성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적합성평가와 목적·취지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함)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합성평가에 대한 존속 필요성 등 검토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에 따른 기업의 유사·중복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 반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3호로 제정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어 현재까지 같은 명칭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등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통식품 등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유자 보호·지원 취지에서 도입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와 유사한 목적·대상·절차 등을 가진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하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유사·중복된 평가의 부담이 있거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 ~ 18. (생략)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 22. (생략)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7. (생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⑫ (생략)

국내외입법정책동향(2025-제11호)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5년 11월 일

발 행: 2025년 11월 일



전국특별자치도의의회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